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
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경미한 변경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(2007.7.12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3.30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6.15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19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없음)

지 구 명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지정목적
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종로구 교남동 62-1 일대	167,844.4	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·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	계				돈의문 1				돈의문 2		돈의문 3		비고
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
		기정	변경	변경후		기정	변경	변경후						
합 계		160,046.2	증) 7,798.2	167,844.4	100.0	144,400.4	증) 7,798.2	152,198.6	100.0	6,801.4	100.0	8,844.4	100.0	
택 지 (획 지)	소계	112,316.0	-	112,316.0	66.9	100,405.1	-	100,405.1	65.9	5,510.1	81.0	6,400.8	72.4	
	주택 용지	95,648.8	-	95,648.8	57.0	95,648.8	-	95,648.8	62.8	-	-	-	-	
	종교 시설	1,671.8	-	1,671.8	1.0	1,671.8	-	1,671.8	1.1	-	-	-	-	
	상업 업무	14,995.4	-	14,995.4	8.9	3,084.5	-	3,084.5	2.0	5,510.1	81.0	6,400.8	72.4	
정 비 기 반 시 설	소계	47,730.2	-	47,730.2	28.4	43,995.3	-	43,995.3	28.9	1,291.3	19.0	2,443.6	27.6	
	공원	7,194.5	-	7,194.5	4.3	6,360.5	-	6,360.5	4.2	834.0	12.3	-	-	
	녹지	1,043.0	-	1,043.0	0.6	1,043.0	-	1,043.0	0.7	-	-	-	-	
	도로	26,839.0	-	26,839.0	16.0	24,061.3	-	24,061.3	15.8	457.3	6.7	2,320.4	26.2	
	공공 공지	123.2	-	123.2	0.1	-	-	-	-	-	-	123.2	1.4	
	광장	594.5	-	594.5	0.3	594.5	-	594.5	0.4	-	-	-	-	
	공공 청사	2,893.5	-	2,893.5	1.7	2,893.5	-	2,893.5	1.9	-	-	-	-	
	문화 시설	9,042.5	-	9,042.5	5.4	9,042.5	-	9,042.5	5.9	-	-	-	-	
존치시설		-	증)7,798.2	7,798.2	4.7	-	증)7,798.2	7,798.2	5.2	-	-	-	-	

※ 존치시설 면적(7,798.2㎡) : 서대문교회(2,224㎡), 스위스대사관(2,377.3㎡), 서원빌딩(384.9㎡), 동아아파트(1,839.8㎡), 부귀빌딩(892.6㎡), 소로2-102호선 인접 존치부지(79.6㎡)

※ 변경내용

- 재정비 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(종로구 고시 제2013-76호, 2013.10.24.) 상
 - 존치시설 누락 도면 등 정정(지구 외 → 지구 내)
 - 재정비촉진 구역 스위스대사관 신축에 따른 대토부지 분할선 표기
- 재정비 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(종로구 고시 제2017-14호, 2017.01.12.) 상 서대문교회 부지정형화에 따른 대토부지 분할선 표기

2)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
3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
5) 교통계획(변경없음)

- ※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(변경)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
 - 새문안로~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

6) 경관계획(변경없음)

7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		구역명	면 적(㎡)	사업방식
총 계			167,844.4	-
돈의문	촉진구역	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	152,198.6	도시환경 정비사업
		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	6,801.4	
		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	8,844.4	

※ 변경내용

- 재정비 촉진구역 구역도(종로구 고시 제2013-76호, 2013.10.24.) 상 존치시설 누락 도면 등
 정정(지구 외 → 지구 내)

8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없음)

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(변경없음)

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
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변경없음)

12)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
13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변경없음)

14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해당없음)

15)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변경없음)

16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

(1) 돈의문1재정비구역(도시환경정비사업)(변경)

가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고
기 정	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	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원	152,198.6	

※ 변경내용

- 재정비 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(종로구 고시 제2013-76호, 2013.10.24.) 상 존치시설 누락 도면 등 정정(지구 외 → 지구 내)

나) 정비계획(변경)

(가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	144,400.4	증)7,798.2	152,198.6	100.0	• 존치시설(7,798.2㎡) 포함
택 지 (획 지)	소계	100,405.1	—	100,405.1	65.9	
	주택용지	95,648.8	—	95,648.8	62.8	
	종교시설	1,671.8	—	1,671.8	1.1	
	상업업무	3,084.5	—	3,084.5	2.0	
정 비 기 반 시 설 등	소계	43,995.3	—	43,995.3	28.9	
	공원	6,360.5	—	6,360.5	4.2	
	녹지	1,043.0	—	1,043.0	0.7	
	도로	24,061.3	—	24,061.3	15.8	
	공공공지	—	—	—	—	
	광장	594.5	—	594.5	0.4	
	공공청사	2,893.5	—	2,893.5	1.9	
	문화시설	9,042.5	—	9,042.5	5.9	
존치시설		—	증)7,798.2	7,798.2	5.2	• 토지이용계획상 존치시설(7,798.2㎡) 포함

※ 존치시설 면적(7,798.2㎡) : 서대문교회(2,224㎡), 스위스대사관(2,377.3㎡), 서원빌딩(384.9㎡), 동아아파트(1,839.8㎡), 부귀빌딩(892.6㎡), 소로2-102호선 인접 존치부지(79.6㎡)

※ 변경내용

- 재정비 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(종로구 고시 제2013-76호, 2013.10.24.) 상
 - 존치시설 누락 도면 등 정정(지구 외 → 지구 내)
 - 재정비촉진 구역 스위스대사관 신축에 따른 대토부지 분할선 표기
- 재정비 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(종로구 고시 제2017-14호, 2017.01.12.) 상 서대문교회 부지정형화에 따른 대토부지 분할선 표기
 - (나) 용도지역계획(변경없음)
 - (다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변경)
 - ① 도로(변경없음)
 - ② 공원(변경없음)
 - ③ 녹지(변경없음)
 - ④ 광장(변경없음)
 - ⑤ 공공청사(변경없음)
 - ⑥ 문화시설(변경)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	
기정	①	문화시설	-	신문로2가 6 일원	9,042.5	

※ 기정) 문화시설(토지 및 시설물)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,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
 변경) 문화시설(토지 및 시설물)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며,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

※ 변경내용

-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신설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[서울시 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] 상 소유권 관련 자구 정정(귀속 → 기부채납)

(라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(마) 건축물의 정비.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① 기존건축물의 정비.개량계획(변경없음)

② 건축시설계획(변경없음)

(바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(사)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(변경없음)

(아)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(변경없음)

: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

(자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해당사항 없음)

(차) 환경성검토결과(변경없음)

(카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※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(변경)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것(변경 없음)

- 박물관마을 계획시 무장애설계 및 방재계획

- 새문안로 ~ 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

5. 동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

6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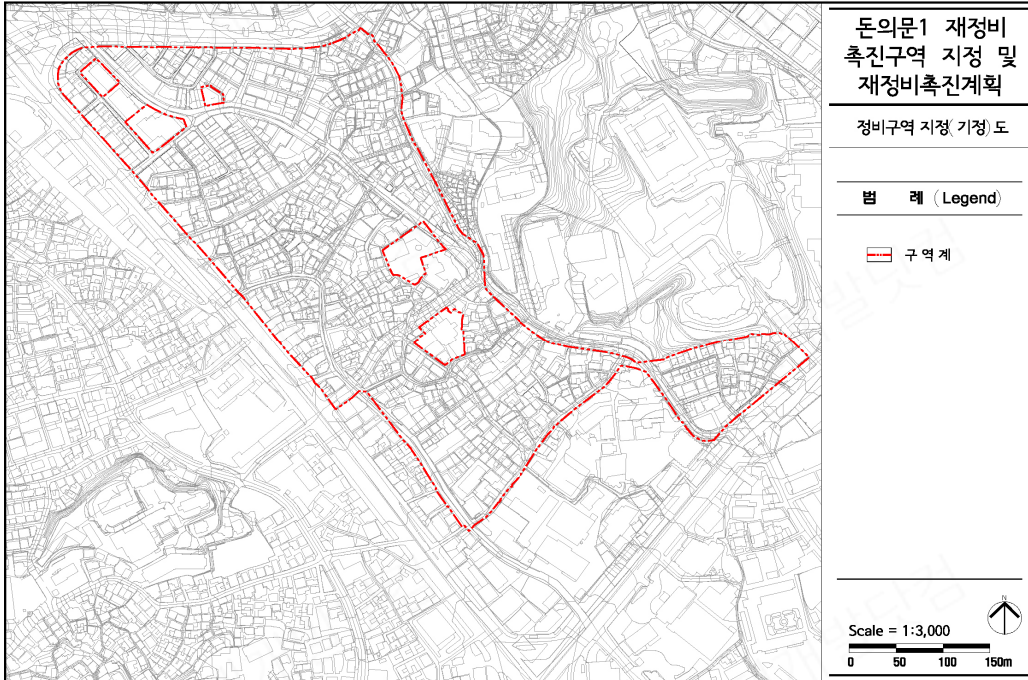
※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 02-2133-7218),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02-2148-269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7. 지형도면의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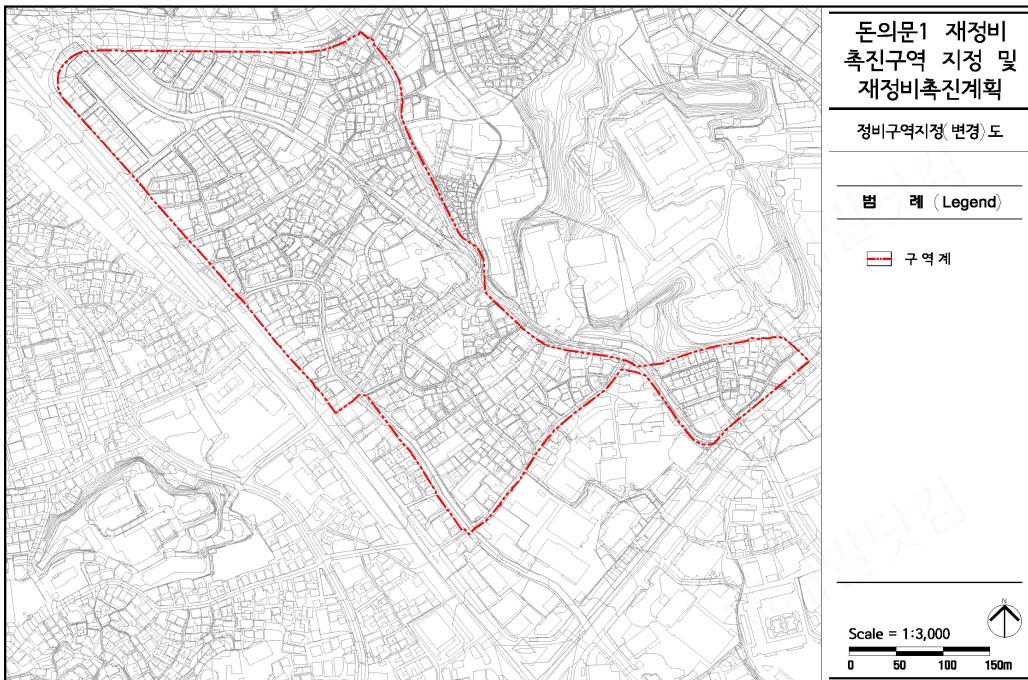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지형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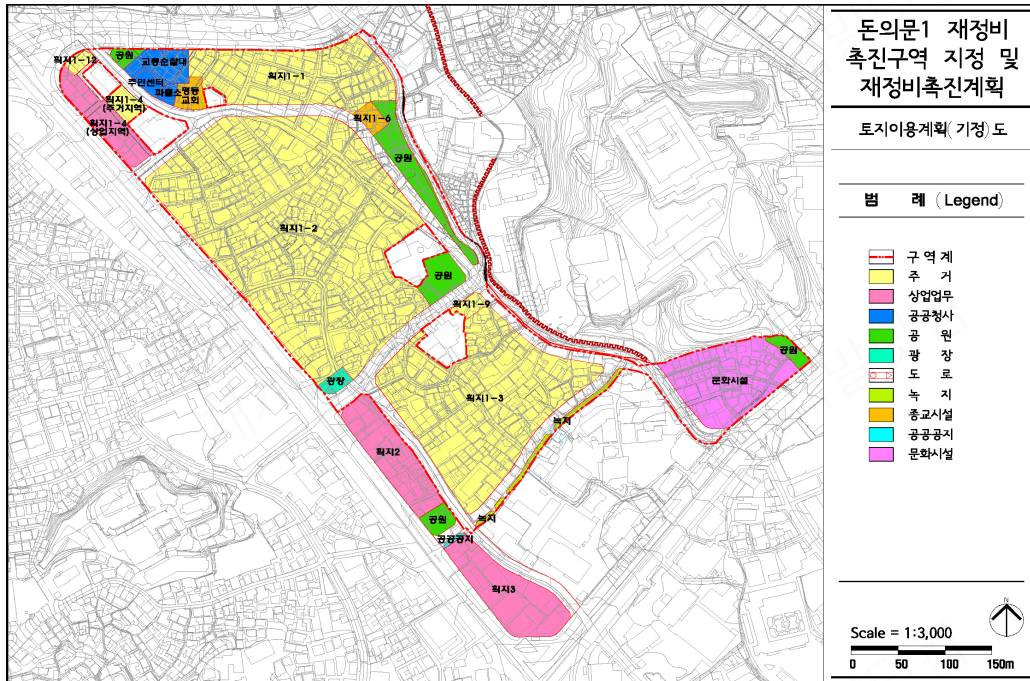
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도(기정)



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도(변경)



■ 토지이용계획도(기정)



■ 토지이용계획도(변경)

